

낙찰수수료 2.

기업, 협회, 조합, 기타발주처

※ 유의 사항

- 1) 본 수수료는 기업, 협회, 조합 등에서 발주한 공고 낙찰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입니다.
- 2)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투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기 낙찰수수료(율)를 적용합니다 (업무계약서 제 7조 3항)
- 3)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해당 구간별 수수료율 최고금액은 상위구간 최저금액 이내로 적용 합니다
(ex : 낙찰금액 9천만원 x 0.8% = 72만원의 경우  상위구간 최저 금액 50만원 적용)
- 4) 일반기업 5억원 이상 낙찰금액은 수수료 상한율을 적용하여 최대금액내로 한정한다.
※ 낙찰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5억원을 그 상한가로 적용한다.

항 목 / 구 분	발주처 / 수수료율	
	낙찰구간별	수수료율/부가세 별도
투찰업체 낙찰수수료 (건별)	1 억원 이상	계약금액의 0.5 % (부가세 별도)
	5천만이상 ~ 1억원 미만	계약금액의 0.8 % (부가세 별도)
	5천만 미만	계약금액의 1.0 % (부가세 별도)